

.....> 주제발표

불법 폐기물 예방 및 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불법 폐기물 예방 및 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순서

I. 추진배경

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I.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최근 고의 부도와 권리·의무승계 등을 통한 책임 회피, 임대부지 등을 활용한 투기 등 신종 불법행위가 기승

<사례 ①> 경북 의성

A업체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사업장 내에 보관(14년~)하였음. 관할 관청인 의성군은 A업체를 대상 총 3차례에 걸쳐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A업체가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률 상 다툴의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인용됨.

A업체는 집행정지 기간 동안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보관하여 허용보관량의 80배가 넘는 약 17만톤의 폐기물 방치 중임. 동 기간 내 A업체는 3차례에 걸쳐 대표자를 변경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며, 의성군은 조치명령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행정대 집행 절차에는 착수하지 않음.

무분별한 권리·의무 승계, 행정처분의 낮은 실효성,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집행 실시

<사례 ②> 인천 서구

B업체는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을 입력하지 않고, 톤당 약 11만원에 폐기물 처리를 수탁하였음. 이후 약 8,500톤의 폐기물을 재활용 원료라고 주장하며 임대부지 내에 불법으로 야적함으로써 약 9억원의 불법이익을 취함. 인천 서구청은 B업체에게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처분을 하였으나, 위탁자를 특정 짓기가 어려워 위탁자를 대상으로는 조치명령 처분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한정적인 처리 책임자 범위, 불법행위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

현행 「폐기물관리법」 체계로는 **신종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발생한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는 데 한계**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한계점

무분별한 권리·의무 승계

고의 부도, 명의 변경 등으로 대행자를 내세울 시 권리·의무가 대행자에게 자동 승계, 종전 명의자의 책임을 물을 수단 無

한정적인 처리 책임자 범위

처리자의 처리 미이행, 위탁자는 간단한 서류 확인 시 면책 등으로 인해 불법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책임자 범위가 협소

행정처분의 낮은 실효성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요건이 명확하지 못하여 법원에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대부분 인용 / 집행정지 기간 동안 업을 지속 영위하며, 불법행위를 유지

낮은 처벌수위

폐기물 부적정처리를 통한 기대이익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아 범죄억제력 미미

소극적인 대집행 실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착수 장기간 소요, 책임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지자체 등 현장에서 대집행 실시에 소극적

현행 「폐기물관리법」 체계로는 **신종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발생한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는 데 한계**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한계점

무분별한 권리·의무 승계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신종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불법폐기물 발생 시
신속하게 책임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요건이 명확하지 못하여 법원에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대부분 인용 / 집행정지 기간 동안 업을 지속 영위하며, 불법행위를 유지

낮은 처벌수위

폐기물 부적정처리를 통한 기대이익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아 범죄억제력 미미

소극적인 대집행 실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착수 장기간 소요, 책임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지자체 등 현장에서 대집행 실시에 소극적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권리·의무 승계 제한 등

종전 명의자에 책임 無

양도·양수, 합병·분할, 경매 등으로 **권리·의무 승계**되면,
불법 처리업체 종전 명의자에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 없음**



고의 부도·명의 변경 등으로 대행자를 내세워(권리·의무 승계)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회피 폐단 차단

1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사전 허가제 도입

사전 허가

양수자 또는 인수자(양도·경매 등), 존속 법인(합병 등)은
사전에 환경부장관(지정 폐기물)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상속은 성격상 사전 허가신청이 어려워, 사후 신고로 같음

새 명의자 검토

허가 및 신고 수리 시, 종전 명의자의 **법적 책임未 이행여부** 및
새 명의자 능력 **결격사유 유무 등을 중점 검토**

2 종전 명의자 법률상 책임 규정

권리·의무 승계에도 법적 책임有

권리·의무 승계 허가 또는 신고수리에 따라 **종전 명의자 허가 등의 효력은 실효**,
법령 위반 시 **법적 책임은** 권리·의무 승계에도 불구 **소멸되지 않음을 명시**

<나>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

행정처분의 무력화

보관량 초과 등의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리명령 등**
행정처분이 행정소송과 가처분(집행정지) 신청에 의해 **무력화**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 대부분 인용



→ 지속적인 반입·야적, 불법 폐기물 폭증



행정소송(집행정지신청)으로 지연 불법 행위 유지·확대 문제 차단

1 반입금지 명령 신설

일정 배수 초과시 반입금지 처분

허용 보관량의 일정 배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입금지 처분을 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불법 상태 확대 방지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낮

영업정지에 비해 권리침해가 적고, 처분의 법률적 요건이 명확하여
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낮아질 것으로 기대

2 불법 처리업체 정보 수집·제공

행정처분 시 통보 의무화

* 행정처분 사실은 폐기물관리시스템(올바로)을 통해 통보

행정처분(영업정지, 반입금지 등)을 할 경우
「폐기물 적정처리 센터(환경공단을 센터로 지정 예정)」에 통보 의무화

센터의 정보제공

센터는 배출자·폐기물처리업자,
공제조합 등 확인 요청 시 정보제공

처리책임 부여

확인요청 등 주의의무를 하지 않은
배출자 등에 처리책임 부여

<다> 처리 책임자 확대

책임자 범위 협소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로

①처리자 ②위탁자(처리능력 확인의무) ③토지소유자 규정

처리자

처리자의 처리 미이행

위탁자

처리 책임을 부여하기 어려운 구조
위탁 시 간단한 서류 확인만 하면 면책

배출자등 위탁자 책임확대 → 상호감시 → 처리자 우량화 유도

1 불법 폐기물 책임자 범위 확대

책임자 범위 확대

배출·운반·최종 처리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를 처리 책임자로 규정**

처리 책임자 규정

- ✓ 폐기물 위탁 시부터 최종 처분까지 처리기준 준수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위탁자
- ✓ 불법 폐기물 사실 인지하고도 폐기물 운반한 자
- ✓ 올바른 시스템 입력 누락한 자
- ✓ 불법행위를 의뢰 또는 교사, 협력한 자

2 운반자 주의 의무 강화

불법 운반자 처벌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폐기물을 운반하였을 경우,
운반자에 대한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마련

<라> 불법 행위 처벌 강화

기대이익에 비해 낮은 처벌수위

폐기물 부적정 처리자가 얻게 되는 **기대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현행 법률의 범죄 억제력 미미

기대
이익



처벌
수위

처벌 강화를 통해 부당이득 환수 → 불법 행위 발생 억제력을 강화

1 행정질서벌(과태료)을 형벌로 변경

처벌기준 상향

현재 과태료로 규정된 불법행위 중 일부(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를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기준 상향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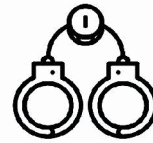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준 위반
- ✓ 올바른시스템 입력 누락 등



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환수

과징금 부과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게된 이익의 2~5배와 원상회복 소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

입법 사례
환경범죄
단속법

특정오염물질 불법배출이익의 2~10
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정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



3 영업정지 같은 과징금 제도 개선

과징금 미납 시 제재

불법행위자가 영업정지를 같은하는 과징금 미납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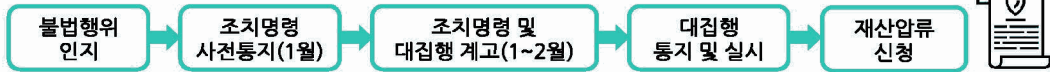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중대한 사유를 별도로 규정
예) 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등

<마> 행정대집행 절차 개선

장기간의 사전절차

대집행 및 재산압류를 위해 조치명령 등 사전절차에 시간 소요,
재산은닉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함



소극적인 대집행 실시

책임 우려(대집행 비용 환수 어려움·감사 등) 등의 이유로
일선 현장에서 대집행 실시에 소극적

권한 불분명

여러 지자체 간 대집행 실시 권한이 불분명
→ 지자체가 대집행 실시에 소극적

불법 폐기물 대집행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

1 대집행 조기 실시 근거 마련

조치 명령 생략

조치 명령 없이 대집행 실시 가능 근거 추가

- 추가 근거
 - ✓ 조치 명령 이행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경우
 - ✓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집행 비용 보전 근거 규정

비용 환수 조치

대집행 前이라도 법원에 재산조회, 가압류 신청 등 비용 환수 위한 조치 가능하도록 규정

비용 징수 규정

조치명령 없이 대집행 한 경우, 그 명령의 대상자들에게 비용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3 대집행 실시 권한 명확화

명확한 권한 규정

관할 지자체가 모두 조치명령 및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최종 처리자 관할 지자체

비용청구



최종 처리자 관할 외 지자체

- ✓ (B)가 대집행을 실시한 경우, (A)에게 청구 규정
- ✓ (A)는 각 처리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비용 징수

<바> 기타 개선사항

1 폐기물 처리업 관리강화

業 적합성 확인

한번 폐기물처리업 허가 받으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영구히 지속
→ **업종별 유효기간**을 정해(시행령) 자격 및 능력 주기적 점검

* 결격사유 해당 여부, 법률 상 未 이행 책임 존재 여부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기준 충족時, 허가를 갱신

결격사유 확대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기간과 대상을 강화**

현행

- 징역 집행유예 기간 미경과
- 허가 등 취소 2년 미경과

개정

- 유예기간 경과 후 5년
- 2년 → 10년

- ⓐ 업무집행 지시자
- ⓑ 명예회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 집행한 자
- ⓒ 경제적 이익의 30% 향유자 등 결격자 포함

2 폐기물관리시스템(올바로) 개선

시스템 입력 의무화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업체 관리대장 올바로 시스템 입력 **의무화** → 폐기물 무자료 거래 차단

책임 강화

미입력, 거짓 입력 시 벌칙(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을 강화하고, 처리 책임자에 포함

3 폐기물 처리 자문위원회 및 센터 설치

자문위원회 설치

불법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대상자 및 범위 결정 자문** 등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환경부에 설치

센터 설치

폐기물 불법 처리자에 대한 **정보제공, 업무지원**(대집행, 법률자문 등), 계도·홍보 등의 수행을 위해 **환경공단**을 센터로 지정

